

## 2026년도 『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』 기업 모집 및 지원 계획 통합 공고

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선도의 일환으로서 5대 핵심 로봇부품의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「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」의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6년 03월 27일

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

### 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
-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6. 10.31  
※ 프로그램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- 접수기간 : 2026. 3. 30(월) ~ 2026. 4. 24(금)
- 접수방법 :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홈페이지([www.kiro.re.kr](http://www.kiro.re.kr))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
- 지원대상 : 로봇산업 관련 제품 개발이 필요한 국내 중소·중견기업
- 지원규모 : 2개 분야, 총 3건 이내 지원 (총 100,000천원)
- 지원내용

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예산	지원규모	비고
제품화 지원	서비스로봇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 지원	50백만원	1개사내외	기업당 50백만원 내외
시제품 제작지원	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로봇부품 개발 아이디어의 상품화에 필요한 시제품	50백만원	2개사내외	기업당 25백만원 내외
계		100백만원	3개사내외	-

※ 신청하는 기업에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대상,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

※ 지원기업 프로그램 중복지원 불가

## II

## 지원내용

### 1] 제품화 지원

- 지원분야 : 단기 제품화가 가능한 서비스로봇 부품 및 부분품
  - ※ 제품화된 로봇부품의 활용도 및 매출 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예정
-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. 10. 31.까지
- 지원예산 : 50백만원
- 지원규모 : 1개사 내외, 최대 50백만원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  -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  - 민간부담금의 30% 이상은 [붙임3] 활용에 따른 장비 이용료 및 시험·평가 수수료 비용으로 집행 하여야 하며, 해당 비용은 장비이용료, 시험·평가 수수료 및 인증 관련 시험비용 등으로 인정함.
- 신청자격 :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, 로봇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
  - ※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임
  - ※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3항과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  - ※ 시제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- 지원내용
  - 로봇융합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부품 및 부분품의 제품화
    - ※ 소형·경량, 고기능, 고출력 기능을 보유한 로봇용 감속기, 로봇용 정밀·저속 고토크 모터, 지능형 그립퍼, 로봇용 멀티 융합센서, 로봇 전용 제어기 및 로봇에 적용 가능한 정밀기계, SW부품 등
  - 가급적 국산화 대체효과가 높은 부품의 제품화 및 수요처가 확보되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부품 등의 제품화
  - 사업비 지원항목
    - ※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부품 기반구축 연구장비 등 [붙임3]의 장비 활용이 가능한 기업만 지원
    - ※ 수요처의 구매의향서 및 부품 도입 협약서 등 제품화<sup>1)</sup> 가능 증빙서류 제출

1) 완성품에 도입 가능하여 제품화 가능한 부품

○ 사업비 지원항목

비목	세목	예산과목명 설명
연구 재료비	연구재료 구입비	시제품 제작, 성능개선, 시험 준비를 위한 재료·부품·모듈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
	연구재료 제작비	시제품, 시편, 시험체, 시험설비 등 제작에 필요한 비용
연구 활동비	외부 전문기술 활용비	시험·평가·인증 수수료, 장비이용료, 설계·해석, 기술지도, 전문가 활용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에 필요한 비용

※ 사업비 집행 시 사업비 집행기준표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

※ 상기 예산과목 외 인건비, 연구수당, 간접비 등은 집행 불가

- 지원 결과물 : 시제품 등 유형적 성과물 및 개발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최종 결과보고서 등

선정방식 : 선정평가위원회 발표심사

지원금 지원방식 : 협약체결 후 지원금 지급

## ② 시제품 제작 지원

- 지원분야 : 서비스로봇 부품 및 부분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
  - ※ 제품화된 로봇부품의 활용도 및 매출 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예정
- 사업기간 : 선정일로부터 2026. 10. 31.까지
- 지원예산 : 50백만원
- 지원규모 : 2개사 내외, 기업당 25백만원 내외(부가가치세 제외)
  -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%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  - 민간부담금의 30% 이상은 [붙임3] 활용에 따른 장비 이용료 및 시험·평가 수수료 비용으로 집행 하여야 하며, 해당 비용은 장비이용료, 시험·평가 수수료 및 인증 관련 시험비용 등으로 인정함
- 신청자격 :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, 로봇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·중견기업이 신청 가능
  - ※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임
  - ※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3항과 시행령 제3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  - ※ 제품화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- 지원금 지원방식 : 협약체결 후 지원금 지급
- 지원내용
  - 서비스로봇 부품 및 부분품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
    - ※ 소형·경량, 고기능, 고출력 기능을 보유한 로봇용 감속기, 로봇용 정밀·저속 고토크 모터, 지능형 그리퍼, 로봇용 멀티 융합센서, 로봇 전용 제어기 및 로봇에 적용 가능한 정밀기계, SW부품 등
    - ※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부품 기반구축 연구장비 등 [붙임3]의 장비 활용이 가능한 기업만 지원

### ○ 사업비 지원항목

비목	세목	예산과목명 설명
연구 재료비	연구재료 구입비	시제품 제작, 성능개선, 시험 준비를 위한 재료·부품·모듈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
	연구재료 제작비	시제품, 시편, 시험체, 시험설비 등 제작에 필요한 비용
연구 활동비	외부 전문기술 활용비	시험·평가·인증 수수료, 장비이용료, 설계·해석, 기술지도, 전문가 활용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에 필요한 비용

- 지원 결과물 : 시제품 등 유형적 성과물 및 개발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최종 결과보고서 등
- 선정방식 : 선정평가위원회 발표심사
- 지원방식 : 협약 후 사업비 지급

### III 추진일정 및 평가절차

#### □ 추진일정

절차	내용	일정	비고
① 사업 공고	<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>	3.30.~ 4.24	한국로봇융합연구원 (KIRO) 홈페이지
↓			
② 신청 접수	< 사업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> • 2026. 04.24 (금), 18시까지	3.30.~ 4.24	이메일 신청 신청기업→KIRO
↓			
③ 평가	< 발표평가 > •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지원과제 선정 • 발표평가 평가 대상은 신청접수후 통보 - 발표평가 : 기업별 발표를 통한 평가 실시 • 심의를 통한 사업비 확정	5월 중	평가위원회
↓			
④ 최종 선정	<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안내 > •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•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내용보완	5월 중	KIRO→선정기업
↓			
⑤ 협약 체결	< 협약체결 > • 과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	5월 중	KIRO↔선정기업
↓			
⑥ 중간 점검	< 중간점검 > • 과제 진행상황 검토 및 향후 일정 공유	8월 중	KIRO→선정기업
↓			
⑦ 완료 점검	< 완료점검 > • 과제 완료상황 검토 및 향후 일정 공유	10월 말	KIRO→선정기업
↓			
⑧ 결과 평가	<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> • 최종 과제 수행 실적 결과 제출 • 지원 과제별 결과에 대한 발표평가 실시	협약 종료후	선정기업→KIRO
↓			
⑨ 사후 관리	< 사후관리 > • 선정기업별 성과관리(매출 및 고용 등)	상시	KIRO→선정기업

※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발표평가 대상자 및 일정은 추후 통보

□ 평가절차

- 평가방법 : 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
  - 프로그램 별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평가기준 확인 필요
  - 세부 일정 및 장소는 공고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
  - 과제 총괄책임자 직접발표를 원칙으로 함
  - 부득이한 경우, 평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무책임자 발표 가능 하며, 이 외 발표자의 발표는 허용하지 않음
  - 요약문으로 발표하되, 필요시 ppt 사용 가능

□ 평가기준

- 제품화 제작지원

구 분	평가항목	배점
사업계획 적정성	사업추진의 필요성(배경 및 추진사항) (15)	35
	해당제품의 차별성(10)	
	생활지원서비스 로봇 관련 적합성 및 평가항목의 적절성 (10)	
사업목표 명확성	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(20)	35
	사업추진 체계 및 내용의 명확성 (15)	
사업수행능력	주관기관의 사업수행능력(기술 및 인력) (5)	15
	추진일정 및 예산의 적정성(10)	
기대효과	제품화 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(10)	15
	기업 성과 (매출, 고용, 인지도 등) 기대 (5)	
합 계		100

○ 시제품 제작지원

구 분	평가항목	배점
사업계획 적정성	사업추진의 필요성(배경 및 추진사항) (15)	35
	해당제품의 차별성(10)	
	생활지원서비스 로봇 관련 적합성 및 평가항목의 적절성 (10)	
사업목표 명확성	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(20)	40
	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의 명확성 (20)	
사업수행능력	주관기관의 사업수행능력(기술 및 인력) (5)	15
	추진일정 및 예산의 적정성(10)	
기대효과	사업화 및 성과창출 가능성(10)	10
합 계		100

○ 지원대상 선정

- 평가위원회 운영 : 제안과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국내전문가 5인  
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
- 신청 사업의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지원과제로 선정
  - ※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  
진 중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
  - ※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평가 진행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 
사업비 확정

## IV

## 제출서류

- 제출방법 :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
  - ※ 전체파일을 취합 후 1개의 PDF파일로 제출(직인 날인 必)
  - ※ 메일제목 : (기업명)\_프로그램명, [예시 : (한국로봇융합연구원)\_제품화지원사업]
- 제출기한 : 2026. 4. 24(금), 18:00 까지
  - ※ 제출서류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, 서류 누락, 마감기한 후 제출 시 접수 불가
  - ※ 접수기한 이후 제출 시 접수 불가 (접수처 이메일 수신시간 기준)
- 제출 및 문의처 :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김찬근 주임 연구원
  - 연락처 : 051-627-5671 / 이메일 : kcg@kiro.re.kr
- 제출서류

No.	제출서류	양식 제공	비 고
1	사업계획서 (※ 사업별 별도양식 활용)	○	공통사항 필수
2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○	
3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○	
4	규정준수 약약서	○	
5	사업자등록증	X	
6	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	X	
7	국세/지방세 납세 증명서	X	
8	중소/중견 기업 확인서	X	
9	최근 3개년(2023~2025) 재무제표 (※ 회계관련 직전년도 2025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2025년 자료는 부가세 납입 증명서로 대체가능)	X	
10	제품화 증빙 서류 (※ 구매의향서, 제품 도입 약약서 등 개발 품의 제품화 증빙이 가능한 서류)	X	제품화 지원만 해당

- ※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(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,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)
- ※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
- ※ 이메일 발송 후, 제출자료 유선확인 必

### III

## 신청자격대상 및 제외대상

#### □ 신청자격 대상

- 프로그램마다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신청대상이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조건 확인

#### □ 신청자격 제외대상

- 서식 제2호 ‘지원자격 제외 대상’에 해당하는 경우
- 자본잠식(완전) 상태 기업은 지원 불가
- 부도, 휴·폐업 기업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
-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,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
- 사업 공고일 현재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 중인 업체(수행기업 대표자, 총괄책임자 등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동 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- 접수일 현재까지 정부, 지자체,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과제
- 기타 공고 내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63411
2	무도유흥주점업	634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
-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#### □ 선정제외

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
-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
## □ 유의사항

- 사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무효처리하며,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-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
- 과제 종료 후, 일정한 성과활용기간 내 사업성과에 대한 추적조사 대상사업이므로 반드시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함
  - 성과활용기간 : 사업종료 후 3년
  - 사업성과지표 : 매출증가액(백만원), 신규고용(명), 기업만족도(%)  
(기업만족도 조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진행)

## VII

### 기타사항

- 응모자가 없거나 평가를 통해 적격기업(기관)이 없는 경우 재공고(연장)함
  - 또한,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(종합평점 70점 이상)에 한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하며,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 재(연장)공고 추진
  -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 -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, 신청자격 부적격 등에 한해 평가 제외 가능
  -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중단 및 환수 조치를 내릴 수 있음
  - 제출된 서류는 일절(一切) 반환되지 않음
  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
  - 기업지원금 중,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금으로 사용가능
- ※ 부가세는 선정기업 부담 원칙